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의료기관 대상에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91, 2204392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II . 검토의견 : 위탁의료기관 대상에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3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4. 9. 27.
- 3) 회부일 : 2024. 9.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3. 9. 27.
- 3) 회부일 : 2023. 9.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 2건의 개정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¹⁾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진료) ① (생 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진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인</u>

- 1)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u><후단 신설></u> ③ ~ ⑧ (생략)	<u>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 ⑧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② · 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7조(의료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존 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2) 「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과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보훈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6개 보훈병원³⁾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고, 위탁 의료기관은 지역에 따라 의원급과 병원급을 지정하고 있음.

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전유공자법」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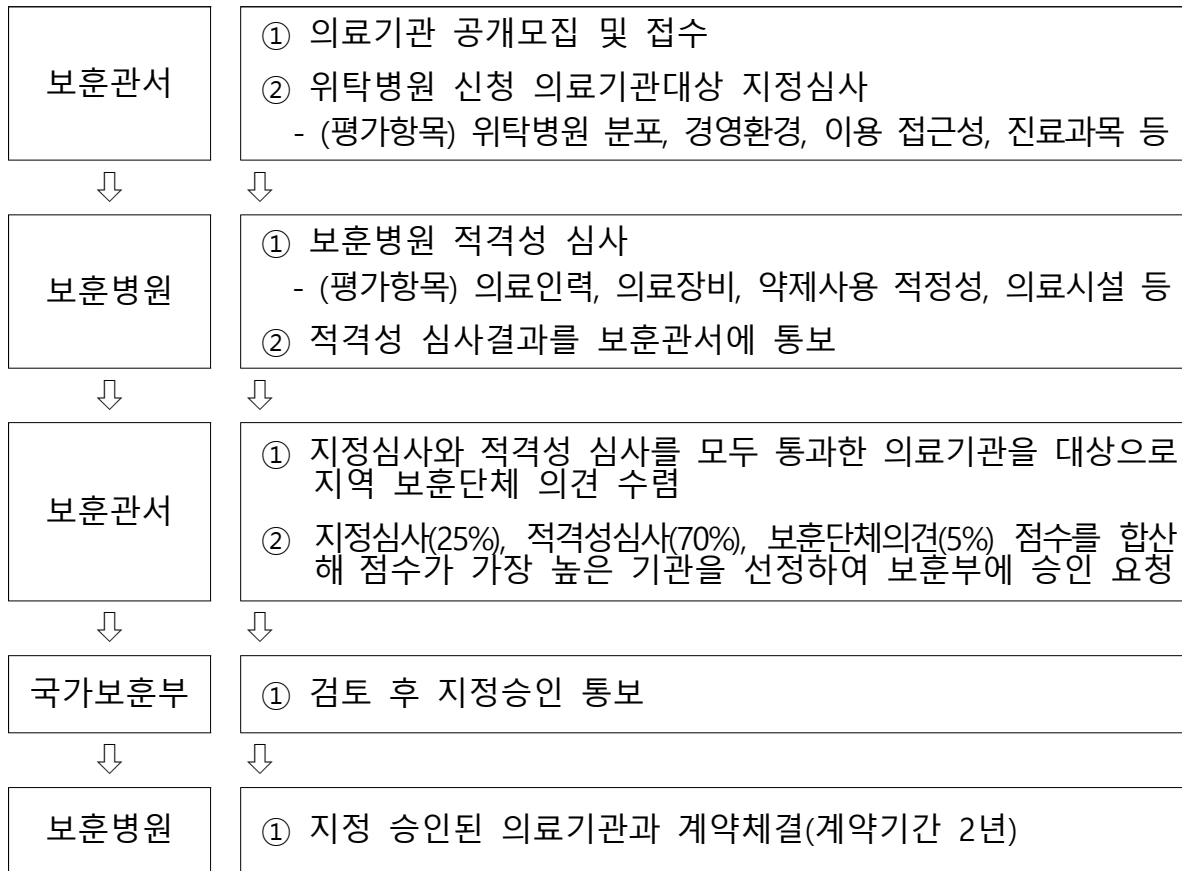
3) 중앙,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보훈병원

- 6개의 보훈병원 외에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지원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부터 대상자 거주지에 위치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기 시작함.
- 1986년 보훈병원 원거리 의료대상자 근접 진료를 위해 제주 지역 위탁병원을 최초 지정한 이래로, 1996년에 ‘위탁병원지정기준’을 제정하고, 1998년 강원도 및 도서지역으로 진료지역을 확대했으며, 2009년에는 진료 대상을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75세 이상 보상공수령 선순위 유족 등으로 확대하였음.

<위탁병원 진료 연혁>

연도	내용
1986	보훈병원 원거리 의료대상자 근접 진료를 위해 제주 지역 위탁병원 최초 지정
1996	위탁병원지정기준 제정
1998	강원도 및 도서지역으로 위탁병원 진료 확대
1999	국가유공자등가료보호처리요령 개정, 위탁병원 감면율 60% 조정
2009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75세 이상 보상공수령 선순위 유족 등 진료 확대

<위탁병원 지정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연도에는 보훈대상자의 이용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안과·치과 등 고령층에서 수요가 높은 특수진료과를 확충하기 위해 매년 100개소 이상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기준 846개소가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음.

<최근연도 위탁병원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1)
위탁의료기관	418	518	582	702	846
전체병원	70,151	71,422	76,032	77,139	78,126
비율(%)	0.59	0.72	0.76	0.91	1.08

자료: 국가보훈부

-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보훈병원 소재지에 25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587개소는 보훈병원인 없는 지역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위탁병원 시도별 지정 현황(846개)>

(2024. 10. 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위탁병원 현황					비고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	계	
서울	101	12	3	1	117	보훈병원소재지
부산	45	8	1	—	54	보훈병원소재지
대구	29	2	1	—	32	보훈병원소재지
인천	18	2	1	5	26	보훈병원소재지
광주	11	1	—	—	12	보훈병원소재지
대전	16	1	1	—	18	보훈병원소재지
울산	14	1	1	3	19	
세종	7	—	—	—	7	
제주	10	2	2	3	17	
경기	77	21	8	21	127	
강원	40	8	3	10	61	
충북	16	7	4	5	32	
충남	27	6	3	7	43	
전북	33	7	4	6	50	
전남	54	17	5	10	86	

구분	위탁병원 현황					비고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	계	
경북	45	11	7	9	72	
경남	41	18	6	8	73	
총합계	584	124	50	88	846	

주)위탁병원 지정 현황은 재계약, 폐업 등에 따라 수시 변동
자료: 국가보훈부

□ 위탁병원은 이와 같이 전국에 걸쳐 꾸준히 지정을 확대해 오고 있으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전체 보훈대상자가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⁵⁾ 1순위는 일반 병·의원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임.⁶⁾

□ 이에 국가보훈부는 「2024년 국가보훈 실천계획」⁷⁾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의원급 전면위탁 시범사업 검토”를 설정하고,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약 67,000개)을 별도 지정 없이 위탁병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

○ ‘경증·만성질환을 앓는 국가유공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의원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

4)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근거한 조사로 3년마다 실시되며, 2024년에는 10,0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5) 국가보훈처·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p.212.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일반병원 60.6%, 보훈병원(20.4%), 보훈병원(14.8%), 국공립병원(4.2%)

6) 일반 병원 이용자의 62.3%는 일반병원 이용이 편리한 교통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7) 국가보훈 실천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매년 수립함.

다는 것으로, 2024년에는 의원급 전면위탁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시범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연차별 계획을 제시함.

<의원급 전면위탁 시범사업 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연 도	추진 내용
'24년	▶ 위탁의료기관 100개소 추가 지정 ▶ <u>의원급 전면위탁 시범사업 실시방안 마련</u>
'25년	▶ 위탁의료기관 100개소 추가 지정 ▶ <u>의원급 전면위탁 시범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u>
'26년	▶ 위탁 의료기관 100개소 추가 지정
'27년	▶ 위탁 의료기관 100개소 추가 지정

자료 : 「2024년 국가보훈 실천계획」

○ ‘2024년 과제별 추진내용’으로는 의원급 전면 위탁 시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등을 위해 2023년에 추진한 연구용역⁸⁾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지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8)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예방과 일상적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위탁병원 제도개편 방안」, p.2.)

<의원급 전면위탁 시범사업 관련 2024년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내용
1/4분기	▶ '24년 위탁병원 지정·확대 수요조사
2/4분기	▶ '24년 위탁병원 지정·확대 관련 실행계획 수립 ▶ 위탁병원 지정 공모 시행 ▶ <u>의원급 전면확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검토</u>
3/4분기	▶ 위탁병원 확대 중간점검 및 지역 재조정 등 검토
4/4분기	▶ 신규 위탁병원 진료 개시 ▶ <u>의원급 전면확대 시범사업 실시방안 마련</u>

자료 : 「2024년 국가보훈 실천계획」

- 개정안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접근성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

구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위탁의료기관	125	0	0	50	0	88
전체병원	1403	239	559	1,392	257	331
비율(%)	8.9	0	0	3.6	0	26.6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정부가 의원급 위주로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 및 국가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경증·만성질환을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위주로 확대하고 있고,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범위를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 재정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보훈병원 내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등 다양한 의료지원 요구사항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의원급(2,434만원) 대비 종합병원(12억 612만원) 및 병원(2억 2,569만원)의 개소당 진료비 청구액이 많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 간 총 2조 2,102억원(연평균 4,420억원)으로 추계됨.

- 셋째,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위탁병원 진료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위탁의료기관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과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겠으나, 재정부담 가중 문제 및 위탁의료기관 이용 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로부터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의원급 우선 확대 정책,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위탁병원 종별 진료비 현황('24. 8월 기준)**

종별	진료비(천원)	연인원(명)	예산 소요액(천원)	
			개소당	환자당
종합병원	120,612,113	1,344,489	1,206,121	90
병원급	39,947,195	947,584	225,690	42
일반의원 (안과, 치과제외)	11,391,908	284,560	24,342	40
치과	787,971	14,411	30,307	55
안과	2,899,390	40,100	93,529	72
계				

